

12. 사택관리 규정

제정일 : 2007년 9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사택(이하 "사택"이라 함)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법인이 주거용으로 건립 또는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및 전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관리) 사택의 운영관리는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거

제4조 (입주 구비서류) ①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택입주신청서(별지1호서식)
2. 무주택증명서
3. 소속부서장 추천서

② 입주가 허가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서(별지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비품인수증.

제5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업무상 또는 학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입주허가) ① 사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를 허가한다.

② 사택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교직원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무주택자로서 담당직무의 성질이 학교인근에 주거함이 학교운영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무주택자로서 가족이 4명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무주택자로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퇴거) 사택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될 때에는 늦어도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식적인 입주기간이 끝났을 때
2.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
3. 학교계획에 의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제 3 장 입주자의 의무

제8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사택의 입주와 동시에 자기비용으로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 기타 수목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4 장 사택의 유지

제9조 (사택의 유지) 사택의 유지를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 ①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② 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 ③ 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검사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불충분으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④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동안 학교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시설의 변경, 첨가가 되었을지라도 이 규정 제8조에 의해 사택을 명도 때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공과금 부담) 재산세를 제외한 제반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입주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입주기간을 적용한다.

사택입주신청서

근무부서: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주가족현황:

관계	성명	주민NO	직업	비고

위와 같이 사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각 서

본인은 이번에 구 동 번지 호 소재 사
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사택관리규정에 규정된 입주조건에 따르고 입주자의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rldls하는 불의
의 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형사 및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성명: □□